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5. 5. . (제 회)	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5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주차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19686호, 2023. 8. 16. 공포, 2025. 8. 17. 시행)됨에 따라,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30만 원, 2차 위반 시 50만 원,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제2호타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과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법 제1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	법 제30조제2항제4호의3	30	50	100
--	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